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장종태 · 차규근
김준형 · 서왕진 · 김선민
신장식 · 백선희 · 이해민
강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령화 시대, 만혼 시대,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,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, 장애형제,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‘이중돌봄’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.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,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이중돌봄(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) 상황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4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① (생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,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2조의4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이중돌봄(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) 상황</u>
5. · 6. (생략)	6. · 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

③ ~ ⑦ (생략)	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